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2021.2.15. 정관 제1호

(일부개정) 2021.2.15. 정관 제2호

(일부개정) 2022.5.4. 정관 제3호

(일부개정) 2023.4.6. 정관 제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공공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Pyeongchang County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약호 P.F.M.C)이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이하 “군”라 한다)에 두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군에서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강원도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의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학아카데미아 관리·운영
2. 평창자연휴양림 관리·운영
3. 계방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4. 대관령휴게소 관리·운영
5. 평창군 공설묘원 관리·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공단의 비상임 이사 중 군의 행정과장과 위탁 업무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③ 임원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감사는 당연직 비상임으로 군의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위원은 임원의 임명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다만, 공단 설립 전의 간사는 공단 설립업무를 담당하는 설립준비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조직 및 정원) ① 공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와 징계 등) 임·직원의 복무와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고문) ① 이사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소송에 관한 사항 중 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과 항소 등의 포기, 재판상 화해 결정, 소 취하 합의 등 소송의 종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및 자기의 공단 대표권 제한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회의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이사회를 주관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사항은 이사회 회의가 종료된 후에 군수에게 보고한다.

1. 이사회 소집 목적 및 주체
2. 이사회에 회부되는 의안에 대한 내용
3. 이사회 의결 결과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29조(운영규정 등)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1조(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각 이사에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기금)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군수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정)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정관 제1호,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규정) ① 공단 최초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가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규정과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이 정관의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정관 제2호, 2021. 2. 15.>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호, 2022. 5. 4.>

3427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4호, 2023.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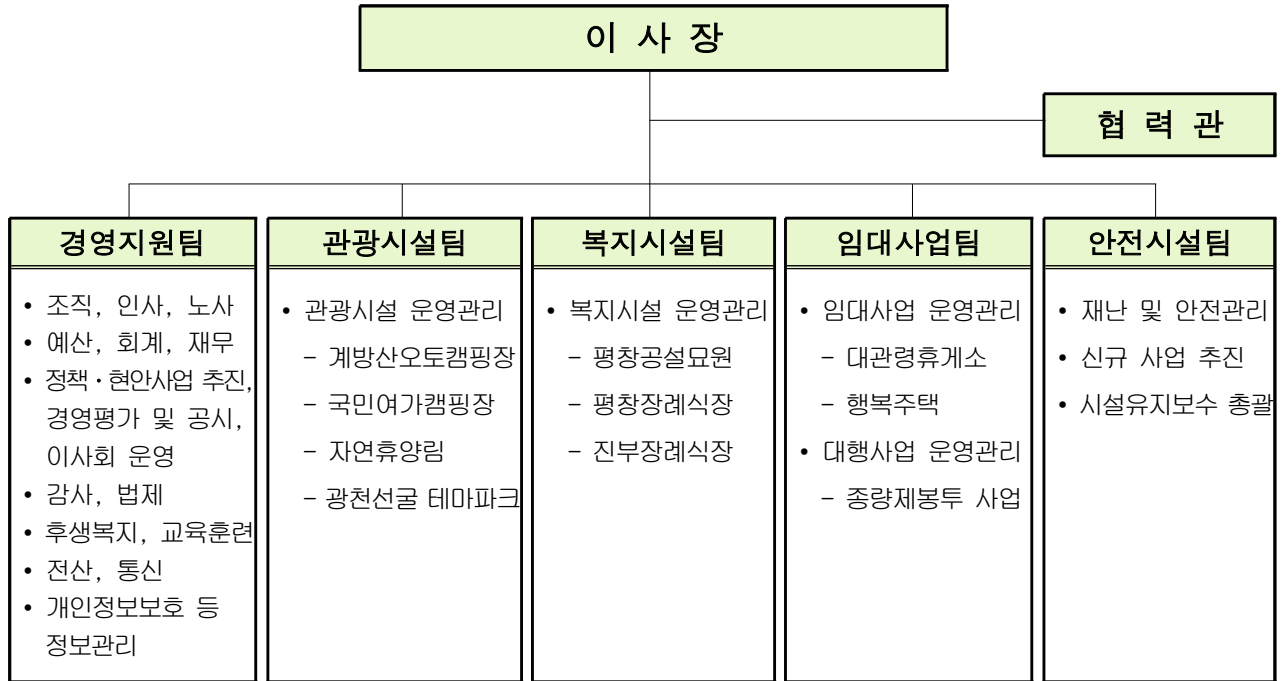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시설관리직'란의 "11"을 "15"로, '계'란의 "30"을 "34"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2.5.4.>

기구표 (제1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3.4.6.>

정원표 (제13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및 시설관리직					
		이사장	6급	7급	8급	9급	시설관리직
계	34	1	5	4	3	6	15

※ 비상임이사 및 감사, 기간제근로자는 제외